

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2003. 4. 1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4월 3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4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9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03. 4. 11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채진욱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"2002년도 중기투자.재정계획"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3년도에 창전동 현청사 부지 910.0㎡를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창전동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대지 830.0㎡와 상호 교환토록 하고,

○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마포구 재산 창전동 246-12외 2필지, 도로, 260.0㎡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후 교환부지 830.0㎡와 합병하여 1,090.0㎡ 규모의 창전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.

○ 재산취득

연월일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천원)	취 득 기	취 득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
	지목	소 재 지	면적 (㎡)				
계			830.0	1,684,900			
1	대지	마포구 창전동 145-1외 5	830.0	1,684,900	2003년도	등 청 사 부지교환	○쌍용제1지역주택조합 마포구 상수동 309-5

※ 등청사 부지 확보면적 : 1,090.0㎡
(교환부지 830.0㎡ + 도로부지 260.0㎡)

○ 재산처분

연월일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천원)	처 분 기	처 분 유	처분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
	지목	소 재 지	면적 (㎡)				
계				1,953,283			
1	대지	마포구 창전동 145-3	910.0	1,847,300	2003년도	부지 교환	○마포.성산동275-3 마포구
2	건물		592.1	115,983	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전동 현 청사(창전동 145-3) 부지 910㎡(약275.7坪)를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(창전동 145-1외 5필지) 대지 830㎡(약 251.5坪)와 상호 교환하고, 창전동246-12외 2필지 도로 260㎡(약 78.8坪)는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도로로써 용도폐지 후 교환부지 830㎡와 합병하여 1,090㎡ 규모의 창전동 신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.

○ 창전동 현 청사 부지와 교환하고자하는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(창전동145-1외 5필지) 대지 830㎡는 부지의 위치나 형상 및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다면 현 청사 부지보다는 높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하는 것이 가하다고는 사료되나 관련 부서에서는 추후

등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자원확보방안도 강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취득(교환)하고자하는 대지 830㎡의 추정 가액은 16억 8천 490만원인 반면 처분(교환)하고자하는 창전동 현 청사(창전동145-3) 부지 910㎡와 현 청사 건물연면적 592.1㎡의 추정 가액 총액은 19억 6천 328만 3천원으로 추정 교환차액은 2억 7천 838만 3천원이 발생하는 바,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교환(처분)재산을 쌍용제1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기 전에 구 수입으로 납입시키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오윤수 위원) : 현 청사 부지와 교환부지와의 추정 가액중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나?

○ 답변요지(채진욱 재무과장) : 교환승인 후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정산되며 차액은 세입 조치됨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(案)

의안
번호

제출일자: 2003.04.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,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"2002년도 중기투자,재정계획"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3년도에 창전동 현청사 부지 910.0㎡를 대흥로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창전동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대지 830.0㎡와 상호 교환토록 하고,
-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마포구 재산 창전동246-12의 2필지,도로,260.0㎡를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후 교환부지 830.0㎡와 합병하여 1,090.0㎡ 규모의 창전동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함.

3. 재산 취득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소, 성 명)	비 고
	지목	소 재 지	면적(㎡)					
계			830.0	1,684,900				
1	대지	마포구 창전동 145-1외 5	830.0	1,684,900	2003년도	동 청 사 부지교환	○쌍용제1지역주택조합, 마포구 상수동309-5	

* 동청사 부지 확보면적 : 1,090.0㎡ (교환부지 830.0㎡ + 도로부지 260.0㎡)

4. 재산 처분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처 분 시 기	처 분 사 유	처분재산 소유자 (주소, 성 명)	비 고
	지목	소 재 지	면적(㎡)					
계				1,963,283				
1	대지	마포구 창전동	910.0	1,847,300	2003년도	부지교환	○마포.성산동275-3 마포구	
2	건물	145-3	592.1	115,983				

5. 근 거

- 지방재정법(개정:2001.1.29,법률:제6400호) 제77조제1항
- 지방자치법(개정:2002.3.25,법률:제6669호) 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시행령(개정:2002.12.31,대통령령:제17871호) 제84조제2항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(개정:2002.10.5,조례:제521호) 제36조,제3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개정:2001.3.31,규칙:제354호) 제29조

창전동 동청사 부지확보(案)

1. 현(現) 동청사현황

(단위: m²)

위 치	대 지	건 물				비 고
		층 수	구 조	연 면 적	건축 일자	
창전동 145-3	910.0 (275.27坪)	지하1~ 지상2	철근콘크리트 / 평육개	592.16 (179.1坪)	신축: '87.12.5	마포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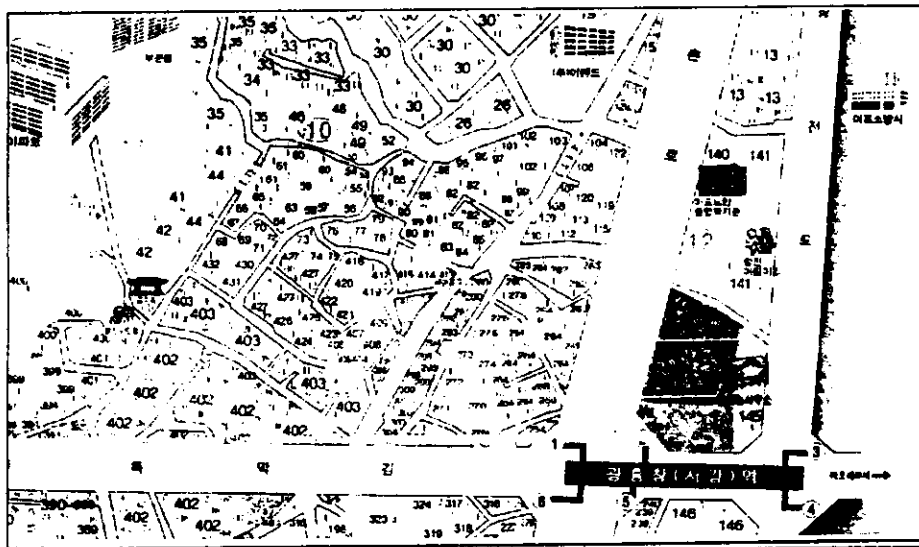
※ '92.2.18 : 현청사 주차장 위치에 환경미화원 휴게실(경량철골조) 28.8m² 신축

2. 부지확보 재산현황

(단위: m²)

구분	위 치	지목	면 적	부 지 확 보 조 건	소 유 자	비 고
취 득	창전145-1외 5	대지	830.0 (251.07坪)	- 현동청사 부지와 상호 교환	쌍용지역주택 조합	
	창전246-12외 2	도로	260.0 (78.65坪)	- '03.3.26 서울시 재산승계	마포구	
	계		1,090.0 (329.72坪)	- 합 병		
처 분	창전145-3	대지 건물	910.0 (275.27坪) 592.1 (179.38坪)	- 쌍용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 재산과 상호 교환	마포구	

3. 위 치 도



現동청사부지	[Symbol]
교환 부지	[Symbol]
사업 부지	[Symbol]